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[김동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301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10. 12.
발의자 : 김동규 의원 등 1 명

1. 제정이유

-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보훈 가족카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시가 설치.설립.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등 복지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함 (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)

3.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등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첨부)

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※ 예고기간 : 2017. 9. 30. ~ 10. 10.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 (집행부 검토의견서)

8. 집행부의견 반영결과 : 붙임5

【붙임1】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(이하 “가족우대카드”라 한다)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가족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,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복지 지원 등) (생략)	제7조(복지 지원 등)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p>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(이하 “가족우대카드”라 한다)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
<신 설>	<p>③ 제2항의 가족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,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신 설>	<p>④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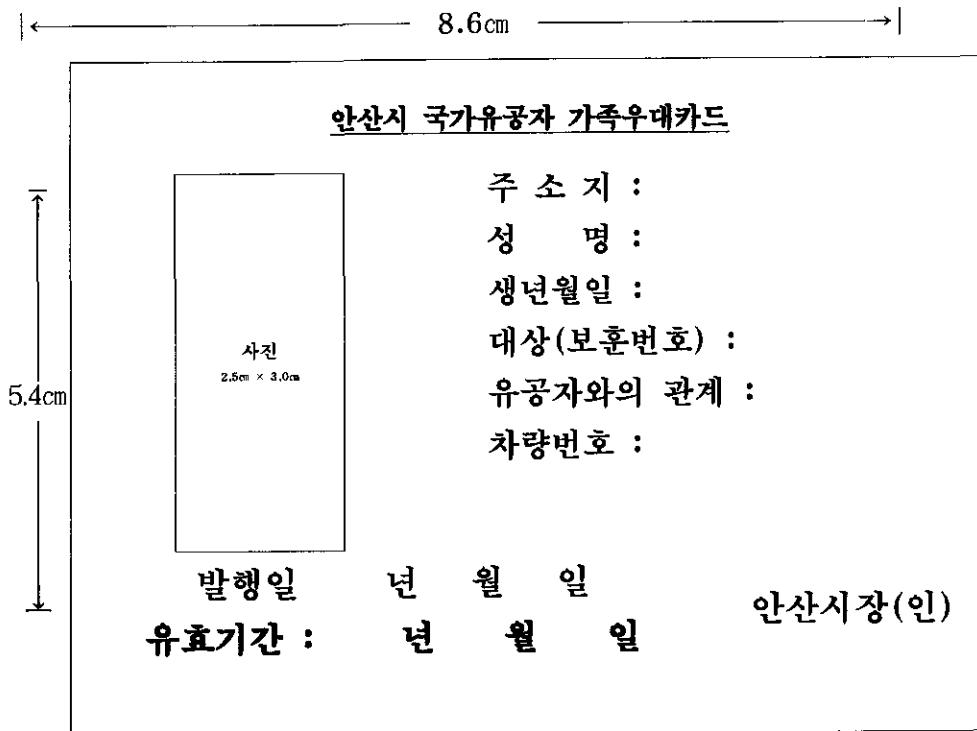
별지 제3호 서식]

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발급 신청서				처리기간 7일	
신청인 (국가유공자)	성명		지급대상유형 (보훈등록번호)		
	생년월일 (남,여)				
	주소				
	전입일				
	연락처 (전화번호)		차량번호		
가족 사항	관계	성명	생년월일	주소	
	배우자				
	자				
	자				
	자				
사진	성명()	성명()	성명()	성명()	
	사진1	사진2	사진3	사진4	
	『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신청합니다.				
	신청인		년 월 일	(서명 또는 인)	
	안산시장 귀하				
구비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		
	1. 국가보훈대상자(유족) 확인원 등 증빙서류 1부. (국가유공자, 참전유공 자증 등) 2. 가족관계확인원(국가유공자와의 관계 명시) 1부.		수수료		
			없음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
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		

[별지 제4호 서식]

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

(앞면)



(뒷면)

이 용 안 내

1. 이 우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안산시 관내 시설의 사용료등 감면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2. 주차장 이용시 차량번호와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.(사업용 차량 제외)
3. 이 우대카드를 분실·훼손등의 시 안산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이용시설 :
5. 문의처 : 안산시 복지정책과(☎481-2861)